○○신용협동조합

신협중앙회 심의필 : 제2022-설명서-071호(2022.03.28.)

파워정기예탁금(Ⅰ형) 상품설명서

■ 이 상품설명서는 **"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"** 및 **신협의 내부통제기준**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**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료**입니다.

■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■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이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. 상품개요 및 특징

○ 상품명 : 파워정기예탁금(Ⅰ형)

○ 상품특징 :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치식 예금

2. 거래조건

○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로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등**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자	• 제한 없음
상품유형	• 거치식 예금
거래방법	• 신규 :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등 (대면 채널 가입에 한하여 통장 발행) • 해지 :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등
가입금액	• 최저 10,000원 이상
계약기간	•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(년 단위 / 월 단위)
이자 지급 방법	• 만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
지급 제한	• 계좌에 **압류, 가압류, 질권**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• **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**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기본이율
(연, 세전)</td><td>(기준일 : 0000.00.00)
<table>
<tr><th>계약기간</th><th>6개월</th><th>12개월</th><th>24개월</th><th>36개월</th></tr>
<tr><td>이율</td><td>0.00%</td><td>0.00%</td><td>0.00%</td><td>0.00%</td></tr>
</table>
※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재예치 시점에 고시된 파워정기예탁금 이율(1년)을 적용
※ 명시된 이율은 0000식 기준입니다.
※ 실제 적용 이율은 통장 내지의 인쇄 이율 및 인터넷뱅킹, 온뱅크 상에서 확인 가능</td></tr>
<tr><td>우대이자율</td><td>•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
※ 우대조건(이율)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 신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td></tr>
<tr><td>만기후이율</td><td>• 자동재연장 이후 해지할 경우 최종 재연장일 현재 고시된 만기후이율 적용
<table>
<tr><th>경과기간</th><th>이율</th></tr>
<tr><td>만기 후 1개월 미만</td><td>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</td></tr>
<tr><td>만기 후 1개월 이상~ 만기 후 3개월 미만</td><td>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× 1/3</td></tr>
<tr><td>만기 후 3개월 이상~ 만기 후 6개월 미만</td><td>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× 1/6</td></tr>
<tr><td>만기 후 6개월 이상</td><td>만기일 당시 보통예탁금 이율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이자
산출근거</td><td>•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
• 만기지급식 :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(예치일수 ÷ 365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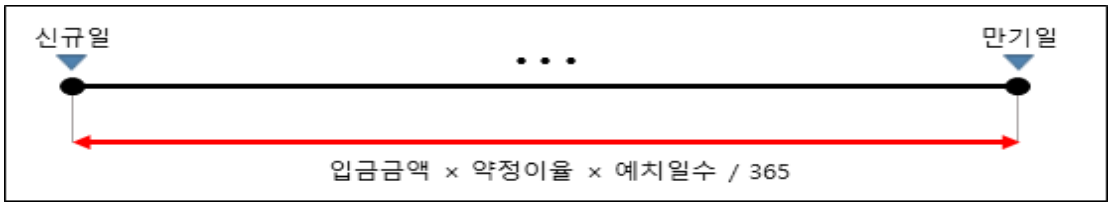

• 월지급식 :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(예치월수 ÷ 12) ÷ 약정 개월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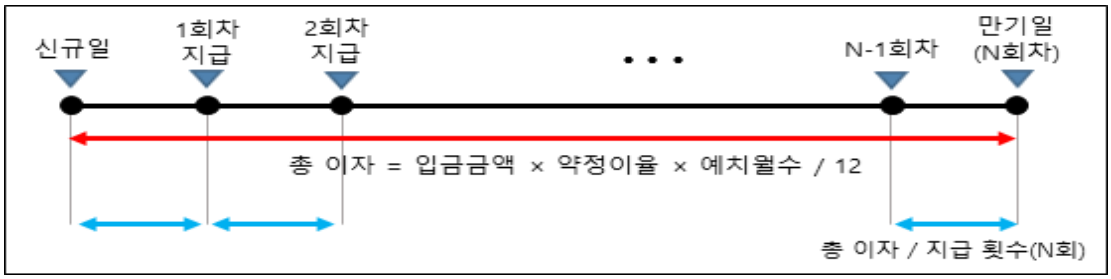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내 용</th></tr>
<tr><td>중도해지이율</td><td colspan="2">
• 자동재연장 이전 해지할 경우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
• 자동재연장 이후 해지할 경우 최종 재연장일 현재 고시된 만기후이율 적용
<table>
<tr><th>예치기간</th><th>중도해지이율(연 %)</th><th>최저이율</th></tr>
<tr><td>1개월 미만</td><td>-</td><td>0.10%</td></tr>
<tr><td>1개월 이상~2개월 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</td><td>0.00%</td></tr>
<tr><td>2개월 이상~3개월 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</td><td>0.00%</td></tr>
<tr><td>3개월 이상~6개월 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</td><td>0.00%</td></tr>
<tr><td>6개월 이상~9개월 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</td><td>0.00%</td></tr>
<tr><td>9개월 이상~11개월 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</td><td>0.00%</td></tr>
<tr><td>11개월 이상~12개월 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</td><td>0.00%</td></tr>
</table>
※ 단, 연 0.1%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.1% 적용
※ 명시된 이율은 0000식 기준입니다.
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이자 계산 방법</td><td colspan="2">
•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(원미만 절사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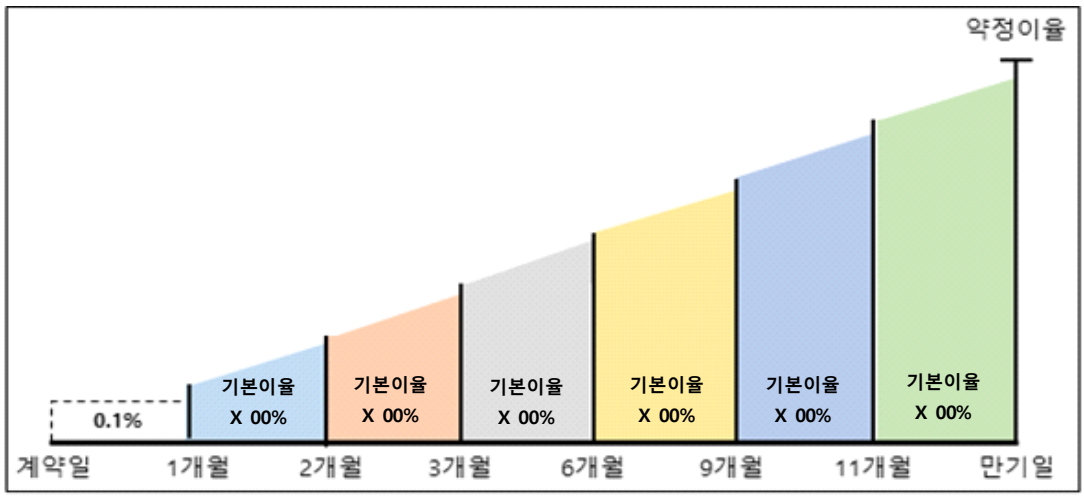

※ 위 그림은 적용율, 중도해지개월수,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.
</td></tr>
<tr><td>예금 해지시 불이익</td><td colspan="2">•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</td></tr>
<tr><td>세제혜택</td><td>가능</td><td>•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
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</td></tr>
<tr><td>재예치</td><td>가능</td><td>• 자동재예치 가능(최장 7년 이내)</td></tr>
<tr><td>감액 및 분할 인출</td><td>불가</td><td>• 불가</td></tr>
<tr><td>양도 및 담보 제공</td><td>가능</td><td>• 양도 가능(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)
• 만기지급식 : 예탁 기간의 1/2 이상 경과시 예탁금 예입액의 100% 이내, 미만시 90%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
• 월지급식 : 예탁금 예입액의 90%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</td></tr>
</table>

연계 · 제휴 서비스	• 해당사항 없음	
계약해지방법	• **영업점 등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**을 통해 해지 가능 •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	
휴면예금	• 이자 지급을 포함한 **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** ※ 예금 가입 시점에 **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**	
예금자 보호	**해당**	• 이 예금은 「신협법」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,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**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**되며, **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**

3. 위법 계약 해지권

○ 신협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원칙 위반시 **일정 기간 이내**에 금융소비자가 **계약해지를 요구**할 수 있습니다. 신협은 **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**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**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**하여야 합니다.

-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**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)**에 서면 등으로 **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**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**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**합니다.

4. 유의 사항

○ **금리변동형 정기예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**

	고정금리	변동금리
운용 형태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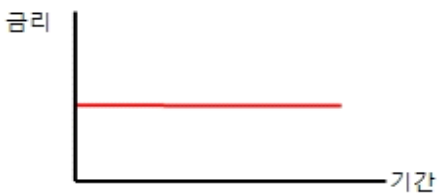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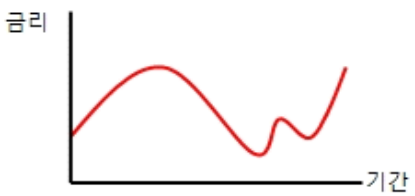
특징	▸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	▸ 일정주기(3/6개월 등) 마다 예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
장점	▸ **금리 하락기**에 이자율 하락 없음	▸ **금리 상승기**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
단점	▸ **금리 상승기**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	▸ **금리 하락기**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

-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**고객센터 (1566-6000) 또는 신협 홈페이지(www.cu.co.kr)**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**금융감독원 (국번없이 1332)**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5. 금융 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	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경과기간	(해당 기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예시 :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